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62~62p (4) 반소제기에 의한 소송	개념, 공식-설명	(4)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(법 제269조 제2항) ① 단독사건의 본소 소송계속 중 합의사건 (2억 원 초과)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본소와 반소를 합쳐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(법 제269조 제2항). 이는 원고의 반소에 대한 심급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. ② 예컨대 원고가 2억 원의 금전지급청구를 하고 피고가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본소와 반소를 일괄하여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. ③ 그러나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에 지법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에 영향이 없어 이송의 여지가 없다.	(4)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(법 제269조 제2항) ① 단독사건의 본소 소송계속 중 합의사건 (5억 원 초과)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본소와 반소를 합쳐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(법 제269조 제2항). 이는 원고의 반소에 대한 심급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. ② 예컨대 원고가 2억 원의 금전지급청구를 하고 피고가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본소와 반소를 일괄하여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. ③ 그러나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에 지법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에 영향이 없어 이송의 여지가 없다
		수정 사유	법개정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